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6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이학영·김영진·정태호

임광현 · 임호선 · 이정문

진선미・정준호・허 영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 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사업계획 등 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의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목적을이를 수 없게 됨.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 및 제46조의2).

법률 제 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 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21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33조제1항 중 "경우로서"를 "경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로 한다.

제45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46조의2제1항 중 "사유"를 "사유(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	제20조(재협의) ①
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
	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
	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	제21조(변경협의) ①
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	
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	
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려는 <u>경우에는</u> 미리 환경부장 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 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략)

경우(개발기본계획 대		
상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u> 포함한다)에는</u>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재협의) ①		
 1. ~ 3. (현행과 같음)		
1. ~ 3. (선생가 실름) 3의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 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 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변경협의) ①
경우(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u> </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④ (현행과 같
<u>o</u>)
5

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1.·2. (생 략) <u><신 설></u>

⑥ (생략)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u>사유(해당 소규모 환</u>
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
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